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망과 한국의 과제

이규엽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연구위원 (kylee@kiep.go.kr, Tel: 044-414-1233)

강민지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mjkgang@kiep.go.kr, Tel: 044-414-1196)

차례

1. 경과
2. 통합문서의 구성과 내용
3. 협상 진전의 걸림돌
4. 전망과 과제

주요 내용

-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내용, 협상 진전의 걸림돌, MC-12 성과 도출 가능성, 한국의 과제를 검토함.
 - [주요 자료] 2021년 2월 Bilaterals.org 홈페이지에 공개된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
- ▶ 통합문서는 6개 분야(전자상거래 원활화, 개방, 신뢰, 공통 이슈, 통신, 시장접근)와 부속서로 구성됨.
 - * 통합문서는 협상 참여국이 제출한 제안서와 협상 내용('19년 3월~'20년 12월)을 취합·정리한 것임.
 -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결제, 종이 없는 무역, 통관 절차, 운송 서비스 등
 - 개방과 전자상거래: 비차별과 책임, 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팅 설비 현지화, 전자전송에 대한 관세 등
 - 신뢰와 전자상거래: 온라인 소비자 보호, 프라이버시, 비즈니스 신뢰(소스코드) 등
 - 공통 이슈: 투명성, 국내 규제와 협력,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 등
- ▶ 협상 진전의 최대 걸림돌은 데이터 관련 쟁점 조항을 둘러싼 협상 참여국(그룹)간 대립임.
 -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조항을 둘러싸고 미국과 EU의 힘겨루기,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를 겨냥한 선진국의 압박과 개도국의 저항, 전자전송의 무관세 적용 기간(모라토리엄 여부)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충돌
 - 대립 구도의 특징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에 국한되지 않고 선진국 사이에서도 나타난다는 점과 협상 참여국간 국내법 제정 수준과 협상 관심 분야의 차이에서 비롯된 내재적 갈등 구조가 협상으로 옮겨왔다는 점임.
 - 이 밖에도 협상 자체의 정당성 논란, 디지털 다국적기업에 유리한 의무조항으로 구성된 협상안에 대한 불만, 규제 선택의 제약과 순응비용 상승 우려 등이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 됨.
- ▶ MC-12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희박함.
 - 2021년 11월에 개최될 MC-12(의장국 카자흐스탄)의 성과로 전자전송 무관세 적용 2년 연장 선언, 이점이 좁혀진 협상용 통합문서 도출, 협상 참여국의 참여 지속과 노력 촉구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 등을 예상함.
-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중간 점검과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로드맵 수립이 시급함.
 - 협상을 둘러싼 비판과 우려가 개도국에만 해당되지 않고 일부 조항(예, 금융 분야)은 한국에도 무거운 규제 순응비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대비·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함.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지속되고 강화된 디지털 통상규범이 FTA를 통해 확산될 것이므로,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단기·중기 디지털 통상전략을 마련하며, 국내 규제·제도·법제의 개선 방향을 고민해야 함.

1. 경과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이나,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협정은 부재한 상황임.

- WTO는 1998년 전자상거래 작업반을 설치하여 일반이사회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1998~2017년까지 격년으로 열리는 장관회의에서 회원국간 전자전송 무관세 적용에 대한 합의 이외에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어려움을 겪음.
- 기존 WTO 협정(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만으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됨(표 1 참고).
 -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와 GATS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 지속

표 1.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WTO 협정의 관련성

구분	분류	WTO 협정의 관련성			
		GATT ¹⁾	TFA ⁴⁾	ITA ⁵⁾	
전자 거래	온라인 상품 주문	GATT ¹⁾	TFA ⁴⁾	ITA ⁵⁾	
	엔터테인먼트 책, 영화, 음악, 게임, TV 등	GATS ²⁾	TRIPS ³⁾		
	통신 네트워크, 이메일, 인터넷전화		GATS Annex on Telecommunications/ Agreement on Basic Telecommunications		
	소매 서비스업과 공급망 관리 온라인 플랫폼, 웹사이트		GATT	TFA	
	금융 서비스 전자결제, 기타 금융거래		GATS Annex on Financial Services		
	기타 소셜미디어, 데이터 저장·가공, 클라우드 등		TRIPS	GATT	TFA
기술 관련	도메인(Domain) 이름		TRIPS	TBT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소프트웨어				
	인터넷 프로토콜(TCP/IP)				
인프라 관련	해저·지상 케이블	TBT	GATT	ITA	GATS Annex on Telecommunications and Agreement on Basic Tele communications
	위성·무선 네트워크				
	인터넷 교환점(IXP)				
	디지털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TRIPS	GATT	TFA

주: 1)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

3)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4) TFA(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무역원활화 협정.

5)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 협정.

자료: Lopez Gonzalez, J. and J. Ferenz(2018. 10. 8), "Digital Trade and Market Openness," OECD Trade Policy Papers, No. 207, Figure 1(p. 14)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은 2018년 3월 14일 WTO 71개 회원국이 채택한 전자상거래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에 근간을 두고, 2019년 3월 협상이 개시된 이래 현재까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협상 참여국도 76개국에서 86개국으로 늘어남.
 - WTO MC-11에서 전자상거래의 무역 관련 사안(trade-related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에 관한 주요 의제를 지속해서 검토하자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됨.
 - 호주, 싱가포르, 일본이 공동 주재국을 맡고, 협상 참여국은 2019년 1월부터 회람된 제안서를 토대로 여섯 차례에 걸쳐 협상 라운드에 참여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화상회의를 통해 주제별 소그룹 회의와 전체 회의를 이어감.
 - 미국, EU,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선진국이 WTO 전자상거래 논의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짐.

- 본고에서는 2021년 2월 10일 Bilaterals.org 홈페이지에 공개된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consolidated negotiating text¹⁾)를 활용하여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내용, 협상 진전의 걸림돌, MC-12 성과 도출 가능성, 한국의 과제를 검토함.
 - 통합문서의 주요 내용 중 전자상거래 원활화, 개방과 전자상거래, 신뢰와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살펴봄.
 - MC-12는 2021년 11월 29일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임(WTO 일반이사회 2021년 3월 1일 승인).

2. 통합문서의 구성과 내용

가. 구성

- 통합문서는 협상 참여국이 제출한 제안서와 협상 내용('19년 3월~'20년 12월)을 취합 정리한 작업문서로, 6개 분야(전자상거래 원활화, 개방과 전자상거래, 신뢰와 전자상거래, 공통 이슈, 통신, 시장접근)와 부속서로 구성됨.
 - 통합문서는 최종본이나 최종 법적 프레임워크(legal framework)를 예단하는 것이 아니며, 대괄호가 없는 텍스트라 하더라도 해당 텍스트에 대해 협상 참여국간 합의·결론에 이르렀음을 의미하지도 않음.
 - 대괄호 부호[...]를 사용하여 차이가 나는 대안(alternative)을 열거하는 형식을 취하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조항 하단에 해당 텍스트(text)를 제안한 회원국을 표기함.
 - 통합문서의 내용은 각종 예외와 특정 분야의 적용 배제 등을 고려하여 작성됨.
 - 예외: 안보 예외, 일반적 예외, 건전성 예외 등
 - 적용 배제: 정부 조달, 당사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당사국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정보, 그러한 정보와 관련된 조치

1) WTO 온라인 기록저장소의 비공개(restricted) 자료인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INF/ECOM/62/Rev.1)는 2020년 8월 19일까지 취합·정리된 파일(INF/ECOM/57)에 최신 정보를 반영한 것으로서, WTO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유한 자에게만 열람이 허용됨.

표 2.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의 구성

구분	소구분	내용
Section A (전자상거래 원활화) ²⁾	A.1 전자거래 원활화	- 전자 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계약 - 전자송장(e-invoicing), 전자결제 서비스
	A.2 디지털 무역원활화 및 로지스틱스	- 종이 없는 무역, 미소 마진(de minimis), 세관 절차 - 싱글 윈도우 정보 교환과 시스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 로지스틱스(logistics) 서비스, 무역 원활화 강화 - 상품 반출과 통관을 위한 기술 사용, 무역 원활화 지원 서비스
Section B 개방과 전자상거래	B.1 비차별 및 책임	- 디지털 제품 비차별 대우 -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책임제한 -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침해
	B.2 정보의 이전	-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국경간 정보 이전 - 컴퓨팅 설비의 위치 - 금융정보/금융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금융 컴퓨팅 설비의 위치
	B.3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B.4 인터넷과 정보로의 접근	- 공공 데이터 개방, 인터넷 접근 개방/[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을 위한 인터넷 접근과 사용 원칙,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의 접근과 사용, 경쟁
Section C 신뢰와 전자상거래	C.1 소비자 보호	- 온라인 소비자 보호, 원치 않는 상업 전자 메시지
	C.2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information/data) 보호
	C.3 비즈니스 신뢰	- 소스코드,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
Section D 공통 이슈	D.1 투명성, 국내 규제 및 협력	- 투명성, 무역 관련 정보의 전자적 가용성(electronic availability) - 국내 규제, 협력, 협력 메커니즘(mechanism)
	D.2 사이버 보안	
	D.3 역량 강화	-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
Section E 통신	E.1 통신 서비스에 대한 WTO 참고문서 업데이트	- 범위, 정의, 경쟁적인 세이프가드(competitive safeguards), 상호연결(inter-connection),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라이선싱(licensing)과 인증, 통신 규제 기관
	E.2 네트워크 장비 및 제품	- 전자상거래 관련 네트워크 장비와 상품
Section F 시장접근	서비스 시장 접근, 임시 입국 및 전자상거래 관련 인원 부족, 상품 시장 접근	
Annex 1	서언, 정의, 원칙, 범위, 다른 협정과 의 관계, 일반적인 예외, 안보 예외, 건전성 조치, 조세, 분쟁해결, 전자상거래의 무역 측면에 대한 위원회	

자료: INF/ECOM/62/Rev.1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협상용 통합문서 초안에는 Section A의 제목이 없지만, 내용을 고려하여 저자가 임의로 Section A의 제목을 작성함.

나. 주요 내용

1) 전자상거래 원활화

■ 전자거래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와 인증, 서명, 계약, 송장 등에 관한 법적 효력의 동등성을 논의하고, 전자결제 서비스에 관한 제안이 담김.

-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legal framework)는 기본적으로 1996년에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에서 제정한 「전자상거래 모델 법」을 따라야 하고, 그 밖의 적용 가능한 국제 기준을 고려함.

○ 전자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체계를 유지하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전자인증과 전자서명의 방법이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고, 관련된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사법·행정 당국에서 확인할 기회를 보장해야 함.

- 전자계약 시 전자적 수단으로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함.

- 전자송장(e-invoicing)과 종이에 작성된 송장 간 법적 효력의 동등성에 관한 논의와 전자송장에 대한 조치가 국가간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함.

- 전자결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선택권 제공, 전자결제라는 이유로 거래체결 금지 불가, 전자결제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면허 요건에 비차별 원칙과 무역 제한요소 최소화 방식 적용 등을 제안함.

* 전자결제 서비스는 중국이 단독으로 제안함.

■ 로지스틱스(logistics)는 종이 없는 무역, 세관 절차 등을 포함함.

- 종이 없는 무역은 무역원활화 관점에서 제안된 것으로,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태의 무역행정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하게 수용하도록 노력함.

- 세관 절차는 한국이 단독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자상거래에서 간소화된 세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함.

2) 개방과 전자상거래

■ 디지털 제품에 관한 비차별 대우 및 인터랙티브(interactive) 컴퓨터 서비스의 책임 제한과 침해를 다룸.

- 비차별 대우의 핵심은 어떤 디지털 제품이 다른 동종의 디지털 제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임.

○ [위치 요건] 다른 회원국에서 창작되거나, 제작되거나, 발행되거나, 계약되거나, 발주되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지털 제품

○ [인적 요건] 다른 회원국에 속한 인(person, 자연인+법인)격을 갖춘 저작자, 실연자(performer), 제작자, 개발자, 소유자의 디지털 제품

○ 보조금(정부지원 대출, 정부 보증, 보험 등 포함)과 방송은 비차별 대우 조항에 적용되지 않음.

-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책임 제한(limiting liability)은 미국이 단독으로 제안한 것으로,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보의 저장·처리·전송·배포 등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단, 공급자·사용자가 정보의 전체·일부를 만들거나 개발한 경우 제외).³⁾
 -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란 컴퓨터 서버에 대한 다수 사용자의 전자적 접근을 제공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가리킴.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조치에는 적용 배제됨.
-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침해(infringement)는 한국이 단독으로 제안한 것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시 서버가 위치한 국가를 포함하여 관련국에 즉각적으로 상황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을 경우 침해를 중단하기 위해 협조하자는 노력 조항임.

■ 데이터와 관련된 핵심 내용으로 국경간 정보 이전과 컴퓨팅 설비 위치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해당 데이터 관련 조항을 금융 분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됨.

- 국경간 정보 이전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전자 수단을 통해 정보의 국경간 이전이 [적용 대상인/기업/인(자연인+법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일 경우 국경간 정보 이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함.
 - 국경간 정보 이전에 관한 자체적인 규제요건을 보유하는 것은 인정
 - 국경간 정보 이전의 예외: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한/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⁴⁾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예외
-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는 [적용 대상인/기업/인(자연인+법인)]에게 회원국의 영토 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으로 회원국의 영토 내에 컴퓨팅 설비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회원국 영토 내에 컴퓨팅 설비를 위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임.
 - 컴퓨팅 설비의 사용에 관한 자체적인 규제요건(통신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 포함)은 인정
 -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의 예외: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한/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⁵⁾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 적용 범위: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는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조항의 적용 배제
- 금융 분야로 확대 적용한 정보 이전 조항과 컴퓨팅 설비 현지화 조치 금지 조항을 미국과 영국이 제안함.
 - 금융 서비스 제공자가 통상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당사국이 타 당사국 금융 서비스 공급자의 국경간 정보 이전(전자 수단 포함)을 제한할 수 없고, 당사국의 금융규제 당국이 규제와 감독을 목적으로 타 당사국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게 해당 회원국의 금융 서비스 컴퓨팅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 [건전성 예외] 건전성 예외(prudential exception)에 따른 조치는 제외
 - [개인정보 예외]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개인 기록이나 계좌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제외

3) (a) 공급자나 사용자가 선의(good faith)로 유해하거나 불쾌한 자료에 접근을 제한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자발적 행위 (b) 정보 콘텐츠 제공자가 유해하거나 불쾌한 자료에 접근을 제한하는 기술적 수단을 적용한 행위 등을 근거로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공급자나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없음.

4) 다만 그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함.

5) 다만 그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함.

■ 전자전송(electronic transmission) 관세에 관한 조항은 전자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다름.

- 국경간 전자전송(전자전송 콘텐츠 포함 여부는 논의 중)에 관세를 (영구적으로) 부과하지 않음(1안, 주로 선진국).
- 전자전송(전자전송 콘텐츠 불포함)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지만, 추후 전자상거래 작업반과 관련된 WTO 장관회의의 결정이 있을 경우 전자전송에 관한 관행을 조정할 수 있음(2안, 인도네시아).
- WTO 장관회의를 통한 합의에 따른 전자전송 무관세 관행 유지(3안, 중국)
- 다른 WTO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한, 내국세나 다른 부과금은 부과 가능

3) 신뢰와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소비자 보호와 스팸 메시지에 관한 조항이 제안됨.

-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기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법규를 채택하고 유지해야 함.
- 통상적으로 스팸 메시지로 알려진,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메시지(unsolicited commercial messages) 관련 조항은 스팸 메시지 사용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음.
- 2021년 2월 5일 협상 회원국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메시지 조항에 합의함(clean text 도출).

■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공하는 [법적 체계·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국제기구나 국제기관이 제시하는 표준, 원칙, 지침, 기준 등을 고려해야 함.

- 개인 구제방법 및 기업의 법적요건 준수방법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를 공표

■ 비즈니스 신뢰는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와 암호화를 사용하는 ICT 제품에 관한 조항을 포함함.

-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는 소프트웨어 자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품의 수입·유통·판매·사용을 조건으로 다른 회원국의 주체가 소유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또는 해당 소스코드로 표현된 알고리즘]에 대한 이전 요구나 접근 요구를 금한다는 의미임.
- 적용 대상 소프트웨어는 상용 소프트웨어(mass-market software)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에 한정되며, 주요 기반시설에 이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는 포함되지 않음.
- 상업적 계약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 회원국의 법제 준수를 위한 소스코드의 수정(modification)은 가능하며, 특히 신청 및 부여 과정에 수반되는 소스코드 공개 요구도 인정됨.
- 암호화를 사용하는 ICT 제품에 관한 비즈니스 신뢰 제고 조항
- 회원국은 [상용] ICT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의 조건으로 [암호화를 사용하는 상용 ICT 제품 / ICT 제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게 (a) 암호 관련 소유권 정보를 공개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 (b) ICT 제품 개발,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에 있어 당사국 내의 사람과 협력하도록 요구 (c) 특정 암호 알고리즘 또는 암호 사용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3. 협상 진전의 걸림돌

가. 국내법 제정 수준

■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협상 참여국(그룹) 간에 차이가 있음.

- 선진국 그룹은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전자거래, 온라인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사이버 범죄)을 모두 완벽했지만, 개발도상국 그룹에는 온라인 소비자 보호 관련법을 제정한 국가 비중이 67%이고,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관련법을 제정한 국가 비중도 80% 미만임(표 3 참고).

표 3. WTO 전자상거래 협상참여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 제정 현황

(단위: %)

법 유형	제정 (Legislation)		제정 준비 (Draft Legislation)		제정 없음 (No Legislation)		관련 자료 없음 (No Data)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전자적 거래 (electronic transaction)	100	90	0	2	0	2	0	6
(온라인) 소비자 보호 (Consumer protection)	100	67	0	4	0	8	0	21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Data protection and privacy)	100	76	0	8	0	8	0	8
사이버 범죄 (Cybercrime)	100	86	0	4	0	2	0	8

주: 1) 선진국은 EU 27개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미국을 포함하며, 개도국은 그 외 모든 협상 참여국을 가리킴.

2)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을 분리해 비중을 계산함.

3) 전자거래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와 종이 문서의 법적 동등성 등을 보장하는 법, 소비자 보호는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상에서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수집·사용·공유되는 개인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사이버 범죄는 소비자 및 기업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상의 범죄에 관한 법을 뜻함.

자료: UNCTAD Global Cyberlaw Tracker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21. 2. 28)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선진국 중에서도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수준이 다르며, 여전히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EU는 개인정보 보호를 자연인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2018년 5월부터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가 역외로 이전될 경우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요구하는 보호수준이 보장되도록 강제
 - 미국 캘리포니아는 2020년 11월 3일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을 확장한 「CPRA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를 통과시켰으며, 미국 내 다른 주도 개정 논의를 추진 중
- 「전자거래법」을 제정한 개도국이라도 구축된 디지털 인프라의 수준은 천차만별이며, 실제 일부 국가에는 종이 없는 무역,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인증, 전자결제 등 관련 컴퓨터 시스템이나 기술이 전무한 실정임.
 - 전자상거래 원활화(전자인증, 전자서명 등)와 관련된 기술적인 설명이나 데이터 관련 조항에 관한 법적 이해력을 갖춘 인력 보유 수준도 국가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⁶⁾

⁶⁾ Ismail, Y.(2020), "E-commerce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istory and Latest Developments in the Negotiations under the Joint Statemen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UTS International, Geneva.

나. 용어와 관심 분야의 차이

■ 협상 참여국마다 사용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용어가 다양하며, 동일한 용어의 정의도 이해가 서로 다름.

- 전자상거래 자체에 대한 학계와 국제기구의 '통일된' 정의가 없는 상황이므로, 전자상거래를 협의로 해석하거나 광의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은 협상 막바지까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WTO 전자상거래 정의는 1998년 전자상거래 작업반 설치 당시 사용한 것과 같음.⁷⁾
- 전자상거래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정의 자체가 통합문서의 초반에 나오지 않고 부속서(Annex 1, p. 80)에 이르러서야 등장하는 것은 용어와 정의에 따른 협상 진척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해석되며, WTO가 1998년 전자상거래 정의를 선택하게 된 것은 OECD나 USITC를 포함한 국제기관이 제시하는 것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를 동의어로 나열한 것은 특징이자 주목할 점임.
- 미국과 중국이 이해하는 전자상거래 정의의 간극이 큼.
 - 미국은 전자상거래를 '인터넷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 거래'로 정의하고 데이터와 무료 서비스의 물물교환(barter trade) 개념으로까지 확대함(미국은 'digital trade'라는 용어를 선호).
 - * 구글 검색 서비스는 소비자와 기업이 인터넷상에서 데이터(IP 주소, 검색 내용과 시간, 지역 등)와 검색 서비스를 주고받는 거래이며,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은 전자상거래의 필요조건이 됨.
 - 중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상품 거래'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근거로 첫째,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이나 마윈이 주장한 e-WTP(World Trade Platform)가 상품 중심의 전자상거래라는 점, 둘째, 데이터 이전 관련 조항에는 중국의 제안이 전무한 점, 셋째, 실제로 중국에서는 구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인터넷 검열과 필터링이 존재하는 점을 꼽을 수 있음.
-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이나 전자전송(electronic transmission) 등에도 협상 참여국의 이해가 상이하여 논의가 길게 이어졌으며, 여전히 논쟁의 소지가 남아 있음.

■ 통합문서가 다루는 범위가 전자상거래 원활화, 개방, 신뢰, 공동 이슈, 통신, 시장접근, 부속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것은 협상 참여국마다 관심을 두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임.

- 통합문서의 초안뿐 아니라 국별 제안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과 EU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협상안을 제안하는 것이 특징임.
- 특히 EU는 통신(telecommunication) 장의 대부분을 단독으로 제안하였으며, 미국은 데이터와 관련된 개방과 신뢰 분야에서 다수의 조항을 제안함.
- 전자상거래의 정의를 좁게 해석하는 중국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거래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자송장, 전자결제, 운송 서비스 등에 관한 조항을 단독으로 제안한 것이 특징임.
- 개도국이 관심을 갖는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와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은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것으로, 통합문서 59페이지 한 쪽에 불과함.

7) "the production, distribution, marketing, sale or delivery of goods and services by electronic means"(WT/L/274).

다. 핵심 쟁점

■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조항: 미국과 EU의 힘겨루기

- 국경간 정보 이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둘러싸고 미국과 EU의 이해 충돌이 발생함.
 - EU와 미국 간에 체결된 데이터 전송 합의인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를 통해 미국은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이 자유로워졌으나, 2020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는 미국이 EU GDPR 제45조와 제46조에 의해 요구되는 보호 수준을 따르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프라이버시 실드를 무효화함.
 - 미국은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며 국경간 이동 데이터에 ‘개인정보를 포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지만, EU는 개인정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협상 전부터 밝혀 왔으며, 실제 EU가 제안한 데이터 이동 관련 조항에는 ‘개인정보 포함(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이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음.
- 개인정보 보호를 소비자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GDPR의 정신이 담긴 EU의 제안서와 개방적인 인터넷 환경을 추구하는 미국 제안서의 간극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음.
 - EU가 일본과 체결한 EPA 제8.81조⁸⁾에서는 ‘발효 후 3년 내에 동 협정에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할지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규정
 - 미국이 주도한 자유무역협정을 살펴보면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하는데, TPP 제14.11조, USMCA 제19.11조, USJDTA 제11조 모두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인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전자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을 허용할 것(TPP), 또는 제한하지 않을 것(USMCA, USJDTA)을 강행의무로 규정

■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선진국의 압박과 개도국의 저항

- [금융 분야 미포함] 컴퓨팅 설비(computing facility)란 상업적 목적의 데이터 저장이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컴퓨터 서버나 저장 장비를 뜻하는데,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는 다분히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을 겨냥한 것으로서 협상 전부터 쟁점이 되었던 사안임.
 - 통합문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등이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를 제안하였으며, 한국도 유사한 내용을 제안함.
- ‘데이터 지역화 요구’를 ‘디지털 무역장벽(digital trade barrier)’으로 규정하는 선진국의 입장과 ‘자국 내 디지털 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정당한 정책수단’으로 간주하는 입장이 대립함(UNCTAD 2021).
 - 중국은 국가안보와 체제의 안정성 유지 등 자국 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수단으로 활용하며, 강력한 데이터 관련법(예컨대, 「사이버 보안법」)을 이미 발효
- [금융 분야] 미국과 영국이 제안한 ‘금융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관련 조항이 더 큰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음.
 - 협상 참여국 일부는 금융 서비스 관련 GATS 부속서에 정의된 ‘금융 서비스 적용 배제’를 적용하기 원함.
 - 금융 분야로 확대한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 요구를 선진국의 협상 카드로 해석하기도 함(Banga 2021).

8) EU-Japan EPA Art. 8.81: Free flow of data

The Parties shall reassess within three year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need for inclusion of provisions on the free flow of data into this Agreement.

[글상자] 미국이 주도한 FTA에서 나타나는 국경간 정보 이전 조항의 진화

- 한·미 FTA 제15.8조(국경간 정보 흐름)에서 ‘무역 원활화를 위해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 중요함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당사국은 국경간 전자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여 국경간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
- TPP 제14.11조, USMCA 제19.11조, USJDTA 제11조 모두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인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을 허용할 것(TPP), 또는 제한하지 않을 것(USMCA, USJDTA)을 강행의무로 규정
- TPP, USMCA, USJDTA는 공통적으로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예외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①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과 ② 목적 달성에 요구되는 수준보다 더 제한하지 않을 것을 규정
- USMCA와 USJDTA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necessary)’ 조치인자에 대한 요건을 추가하며 필요성 요건 강화

■ 전자전송의 무관세 적용 기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참여한 의견 대립

- 전자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한시적(2년)’ 무관세 적용 관행이 이어진 것은 전자전송에 대한 법적 개념, 적용 대상, 지위(상품/서비스)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기술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임.
- 인도네시아는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전자전송물을 관세 부과 범위에 포함했고, 법적 근거를 토대로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상품을 과세 범위 안에 둠.
- 전자전송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모라토리엄) 논쟁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결 구도가 밀바탕에 있음.
- [찬성 논리] (1) 관세수입 하락폭 미미 (2) 무역장벽 완화 효과 (3) 소비자와 기업에 이로움(Andrendelli and Lopez-Gonzalez 2019)⁹⁾ (4) 전자전송에 관세 부과 시 경제에 부정적 영향(Lee-Makiyama and Gopalakrishnan 2019)¹⁰⁾
- [반대 논리] (1) 관세수입 급락 (2) 정책규제 수단의 제약(Banga 2019)¹¹⁾
 - * 모라토리엄 논쟁을 디지털세 논의와 연결 지으려는 시도도 있으나, ‘OECD/G20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프로젝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가 주요 목적이므로 두 사안은 결이 다름.
- 현재 협상에서 전자전송 관세와 관련하여 세 가지 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짐.
- 영구적 무관세: 미국, 싱가포르, 홍콩, 브라질, 한국, 뉴질랜드, 캐나다, EU, 러시아, 일본 등이 제안¹²⁾
 - * 한국은 한·미 FTA 제15.3조(디지털 제품) 제1항과 한·EU FTA 제7.48조 제3항을 통해 기본적으로 전자전송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 원칙을 수용

9) Andrendelli, A. and J. Lopez Ganzalez(2019. 11. 13), “Electronic transmissions and international trade - shedding new light on the moratorium debate,” OECD Trade Policy Papers, No. 233, OECD Publishing, Paris.

10) Lee-Makiyama, H. and B. N. Gopalakrishnan(2019), “The Economic Losses from Ending the WTO Moratorium on Electronic Transmissions,”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No.3/2019.

11) Banga, R.(2019), “Growing Trade in Electronic Transmissions: Implications for the South,” UNCTAD Research Paper, No. 29, UNCTAD, Geneva.

12) 다른 두 제안(인도네시아와 중국)은 p. 8 참고 바람.

라. 협상장 밖 비판과 우려

■ 협상 자체의 정당성 논란과 비판

- WTO 회원국 60개국(EU27+59국)만이 협상에 참여하므로,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WTO 회원국이 78개국에 이르는 상황임.
-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21년 3월 1일 총회 개최를 앞두고,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은 다자 협정이 아니고, 마라케시 협정 제2조 제3항상의 복수국간 협정¹³⁾도 아니”라며, 공동성명 이니셔티브(JSI: Joint Statement Initiatives)의 법적 지위에 의문을 제기함.¹⁴⁾
- JSI 지지국은 ‘개방형(open)’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결과가 최혜국대우(MFN)에 기초하고 추가 자유화를 제공한다면, WTO 회원국의 ‘wider approval’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함(World Trade Online 2021. 2. 22).
 - 협상이 WTO 틀 밖에서 진행되는 형식이고 회원국 일부만 협상에 참여하므로 협상을 둘러싼 논란과 비판은 피할 수 없으나, WTO 다자주의 협상이 오랫동안 교착상태(deadlock)에 빠졌던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
- 협상의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전자상거래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협상 타결 후 이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검토는 협상 참여국에 남겨진 과제임.
 - 협상 결과의 법적 구조는 시장접근 의무와 연계되는데, 그 관계에 대한 결정도 차후에 해결해야 할 숙제임.¹⁵⁾

■ 디지털 다국적기업에 유리한, 강한 의무조항 일변도의 협상 조항에 대한 불만

- ‘~을 보장(ensuring)’, ‘~은 요구 금지(no party shall require)’라는 표현을 담은 데이터 관련 의무조항은 이미 시장을 선점한 디지털 다국적기업에만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됨(James 2020).¹⁶⁾
- 일부 통상법 전문가는 미국 주도의 TPP-Style 전자상거래 협상이 첫째, 디지털 시장의 선도자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둘째, 개발 관련 조항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며, 셋째,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이 개도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함(Kelsey 2018).¹⁷⁾

13) 마라케시 WTO 협정 제2조 제3항은 복수국간 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s)에 대해 규정함. 부속서 4의 복수국간 협정은 WTO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며 수락한 회원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짐. 부속서 4에 열거된 협정은 정부조달, 민간항공기, 낙농, 우육 협정으로, 현재 정부조달, 민간항공기 협정만 남음. 마라케시 협정 제10조 제9항에 따르면, 회원국 전체의 총의(consensus)에 의해서만 WTO상 복수국간 협정이 추가될 수 있음.

14) WT/GC/W/819, “The Legal Status of ‘Joint Statement Initiatives’ and their Negotiated Outcomes”(2021. 2. 19),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WT/GC/W819.pdf&Open=True>.

15) 전자상거래 협정의 적용 범위로 양허 등을 통해 시장접근이 허용된 분야로만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 분야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음. 참고로 TPP, USMCA의 경우 투자, 국경간 서비스 무역, 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예외 및 비합치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TPP: 14.2조/USMCA: 19.2조) 시장접근이 허용된 분야에 대해서만 전자상거래 철폐상의 의무가 적용되고, USJDTA의 경우에는 서비스 또는 투자 관련 비합치 조치에 적용 배제를 설정하지 않아(제2.2조) 서비스 개방 여부에 관계 없이 전자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됨.

16) James, D.(2020), “Digital Trade Rules: A Disastrous New Constitution For the Global Economy by and for Big Tech,” Rosa-Luxemburg-Stiftung, Brussels Office.

17) Kelsey, J.(2018), “How a TPP-Style E-commerce Outcome in the WTO would Endanger the Development Dimension of the GATS Acquis (and Potentially the WT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1, pp. 273-295.

- 서비스 시장접근(Market Access)에 나열된 5개 산업(사업 서비스, 통신 서비스, 도소매 서비스, 금융 서비스, 운송 서비스)에서 시장 개방이 추가로 허용될 경우, 서비스 순수출국인 선진국은 이득을 보지만 서비스 순수입국인 개도국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 경고(Banga 2021)¹⁸⁾

■ 규제 선택의 제약과 순응비용의 증가 우려

- 전자상거래 의무조항에 순응한다는 것은 국내 디지털 산업정책을 펼칠 때 규제 선택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임.
- 전자상거래 의무조항의 이행과정에서 디지털 인프라가 미비하고 관련 인력이 부족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특히나 상당한 수준의 순응비용(compliance costs)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Banga 2021)가 있음.

4. 전망과 과제

가. MC-12 성과 전망

■ WTO 전자상거래 협상 진전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과 부정 요인이 동시에 작용

- [긍정 요인] ① 미국과 여타 선진국의 협상 주도 ② 협상 참여국의 적극적인 참여 ③ MC-12에서 상대적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의 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점 ④ WTO 사무총장의 의지(MC-12까지 진전시켜 나가야 할 주요 의제로 꼽음; World Trade Online 2021. 3. 1).
- [부정 요인] ① 2021년 11월 말 MC-12까지 협의의 진척을 위한 가용 기간이 7~8개월에 불과한 점 ② 코로나19 장기화와 온라인 협상 인프라 부족이 회의 추진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점 ③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점 ④ 비판과 우려를 누그러뜨리고 개도국의 요구사항(역량 강화, 기술 지원 포함)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통합문서의 내용 개선에 시간이 필요한 점

■ MC-12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전자상거래 규범 목표, 데이터 보호를 둘러싼 EU와 미국의 힘겨루기, 핵심 조항을 둘러싼 쟁점 부상과 협상 참여국(그룹)간 갈등 구조 등이 낮은 도출 가능성의 주요 이유임.
- 단기에는 협상 진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요인이 긍정 요인을 압도할 것으로 판단함.
- 현실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MC-12 성과는 전자전송 무관세 적용 2년 연장 선언임.
- 추가로 (i) 쟁점 조항에 이견이 좁혀진 협상용 통합문서 도출 (ii) 협상 진척의 성과, 향후 협상 과제 제시, 협상 참여국의 참여 지속과 노력 촉구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 등 예상됨.

18) Banga, R.(2021), "Joint Statement Initiative on E-commerce (JSI): Economic and Fiscal Implications for the South," UNCTAD Research Paper No.58, UNCTAD/SER.RP/2021/1.

-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중심으로 합의안을 이끌어내 수준이 낮더라도 조기 수확(early harvest)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으나, 이 시나리오는 높은 수준을 지향하는 미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1. 2. 9)이 원하지 않는 결과이므로 실현 가능성은 낮음.

나. 한국의 과제

■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의 초안이 작성되었고, 2021년 한 해 협상이 지속될 예정이므로 중간 점검이 필요함.

- 협상장 밖 비판과 우려가 다른 국가(특히 개도국)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조항은 한국에도 무거운 규제 순응비용을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요구됨.
- 한국이 협상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분명히 설정하고, 경제적 영향(추가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 포함), 규제·제도·법제 개선 과제, 기술적 보완과제 식별 등의 노력 필요

■ 협상 틀 안에서 전자상거래 통계 구축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기(회람 방식) 권장

-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국제기관에서 발간하는 일부 보고서가 전자상거래 관련 통계 결과를 제시하나 이는 일부 국가의 국가통계 자료와 서베이 결과를 토대로 추정된 값이고, 수집된 통계 자체가 상품 거래 중심이어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거래는 파악하기 어려우며, 특히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관한 통계는 거의 전무함.
- 양자·지역, 다자 협상간 널리 사용되는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와 대비됨.
 - * WITS는 품목 단위 수준(HS 6-digit)의 상품 무역 통계와 관세·비관세 조치 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타결되기 전후에도 국경간 전자상거래 통계가 체계적으로 집계·관리·보급되는 것은 협상 진전과 이행 과정에서 필수요건이라 판단됨.
- 관련 통계의 미비는 전자상거래 협정 체결에 따른 사후 영향 평가의 어려움으로 이어짐.

■ 한국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요인 파악이 시급함.

- 디지털 무역장벽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통계화·문서화한 자료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뿐 아니라 양자·지역 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단기 선결과제임.
- 미 무역대표부(USTR)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작성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별도로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 장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 속도가 빠르므로 설문조사는 최소 1년 단위로 실시해야 하며, 설문 대상 기업 수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임.
- 디지털 관련 기업과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식도 병행할 필요

■ 디지털 무역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로드맵을 수립할 시점임.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지속되고 양자·지역 무역협정을 통한 전자상거래 규범이 확산될 것이므로,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 설정과 단기·중기 디지털 통상전략을 마련할 필요
- 디지털 뉴딜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 통상정책을 고안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규범 변화 동향을 감안하여 국내 규제·제도·법제 개선 방향을 고민해야 함.
 - 국내 디지털 전문가, 싱크탱크, 학계, 정책입안자, 시민단체, 기업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개선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은 필수
- 디지털 무역 담당 주무부처의 인력 보강과 디지털 무역 관련 부처간 업무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KIEP**